

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 10/2560 호

투자위원회 고시 제 2/2557 호에 따른 추가 권리 및 혜택 부여 방안

첨단 기술 및 혁신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불기 2520 년(1977 년) 투자촉진법 제 16 조 두번째 단락, 제 18 조, 제 31 조 및 제 31/1 조에 의거하여 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/2557 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 및 혜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는 바이다.

1. A1 그룹과 A2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/2557 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의 9.2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치기반 혜택(merit-based incentives)을 받을 수 있으며, 추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. 단,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은 13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생산을 위한 현대적 기계 및 로봇 시스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B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에 추가적인 권리 및 혜택을 부여한다. 단, 투자위원회가 정한 특정 방안에 따른 활동은 이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며,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. 추가 권리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.

(1) 생산 자동화 시스템 및 최신 기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또는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, 3 년간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. 이 방안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(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)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(2) 자동화 시스템 투자의 경우, 태국 자동화 산업과의 연계 가치가 자동화 시스템 총 가치의 30 % 이상에 달한다면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는 투자액(토지 비용 및 운영경비 제외)의 100 % 로 상향된다.

(3) 신청서는 2020 년 12 월 30 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.

본 고시는 2017 년 9 월 15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고시일 2017 년 10 월 28 일

(General Prayut Chan-o-cha)

투자위원회 의장